

# 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37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4월 30일  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조례개정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,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수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시장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- 시장은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

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(안 제5조제3항)

### **3. 참고사항 : 생략**

# 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을 “시장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3항을 개정안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시장은 매년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시장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-----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및 같은 조에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시장은 매년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실태조사) ① <u>시장은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